

## 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725호

건설신기술 지정

‘실시간 위치추적장치(RTK-GNSS)와 사진정리시스템을 이용한 절토사면의 현장조사 및 분석기술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청운구조안전연구원(변종걸)		
	주 소	우2647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6, 302호(무실동, 정법프라자)		
	전화번호	033-735-3073	팩스번호	033-735-3072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백양엔지니어링(주)(김일곤)		
	주 소	우058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민로 10, S20호(문정동, 가든파이버틀)		
	전화번호	02-409-7373	팩스번호	02-409-4666

### 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978호
- 명 칭 : 실시간 위치추적장치(RTK-GNSS)와 사진정리시스템을 이용한 절토사면의 현장조사 및 분석기술
- 기술분야 : 토목 > 토질 및 기초 > 사면 관리 및 보강
- 신기술의 내용  
이 신기술은 실시간 위치추적장치인 RTK(Real Time Kinematic) -GNSS를 기반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면내의 점검자와 손상구간의 위치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현장조사, 손상물량산출, 손상부 사진 촬영 및 정리, 전차손상 비교 등이 가능하여 자료정리 및 이력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시스템이다.
- 신기술의 범위  
실시간 위치추적장치 RTK(Real Time Kinematic)와 태블릿, 휴대폰, 카메라를 연동한 모바일앱, 웹서버로 구성된 시스템을 실시간 동기화하여 점검자의 실시간위치 확인, 손상부 사진 촬영 및 정리, 전차손상비교, 손상물량통계 등이 가능한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시스템

### 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### 4. 신기술품셈

- 해당 없음

### 5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